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14
----------	----

제안연월일 : 2022. 9.5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개경쟁을 통해 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6조(위탁관리)에 의거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시설 현황

- 위탁시설 :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 위치 및 규모 :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6(633.59m²/307.03m²)
- 운영예산 : 110,259천원(전액 군비) ※ 2022년 예산
- 현 수탁자 : (사)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지회장 김대성)
- 사업내용 : 노인 여가생활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3. 1. 29. ~ 2028. 1. 28.(5년)
- 위탁내용 :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전반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10.
- 수탁자 선정 심의 및 위탁계약 체결 : 2022. 11. ~ 12.

4. 기대효과

- 노인복지 분야에 많은 경험과 경력,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복지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 노인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활성화된 교육, 복지회관 직원 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노인복지사업 전문성 제고에 기여

5. 관련자료

- 관련법령 1부. 끝.

관계법령 발취

□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6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평창군지회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위탁관리기간은 이를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노인복지회관 시설유지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노인복지회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제3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제3자(이하“사용·수익자”라 한다)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수입은 수탁자가 제3조의 업무수행 및 노인복지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리인과 상담요원을 배치하되, 상담요원은 사회복지사3급 이상의 자격증소지자이어야 한다.